

---

# 2021년 영동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

2021. 4.



# || 목 차 ||

I. 적극행정 추진방향 .....	1
II.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4
III.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7
I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8
V. 소극행정 혁파 .....	11
VI. 향후계획 .....	14

# 2021년 영동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 I

### 적극행정 추진방향

#### 1

#### 추진근거 및 배경

#####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20.8.25.)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19. 12. 30. 제정)

##### □ 추진 배경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공무원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업무 대처가 필요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도 및 지원 체계 필요

#### 2

#### 적극행정 운영 실적

#####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신청자(부서)	건 명	처리결과
계	총 3건	대상: 3건, 미대상: 0건
건설교통과	접도구역 해지 요청 및 용도지역 변경 요청	사전컨설팅감사 의견통보 (도 ⇒ 군 ⇒ 신청부서)
건설교통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유보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통보 (도 ⇒ 군 ⇒ 신청부서)
산 림 과	민주자산휴양림 영업중단 재난지원금 지원	사전컨설팅감사 의견통보 (도 ⇒ 군 ⇒ 신청부서)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홍보: 제도 안내 공문 총 4회 시행

□ 소극행정 신고현황

구분	신고센터 민원접수			소극행정 민원처리 결과	
	계	소극행정	일반	해당	미해당
건수	10	10	0	0	10

□ 소극행정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점검기간	점검결과
2020년 상반기	연말연시, 설명절 공직감찰	'19. 12. 17. ~ '20. 1. 31.	특이사항 없음
	코로나19, 선거, 산불대책기간 공직감찰	'20. 4. 1. ~ 4. 15.	특이사항 없음
2020년 하반기	하계휴가철 공직감찰	'20. 7. 6. ~ 7. 24.	특이사항 없음
	추석명절 공직감찰	'20. 9. 21. ~ 10. 6.	특이사항 없음
	연말연시 공직감찰	'20. 12. 17. ~ '21. 1. 15.	특이사항 없음

□ 공직자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노력

-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실시(총 652명 이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접도구역 해제를 통한 주민불편 개선(행정6급, 정경순)

□ 보완점

- 불합리한 규제 발굴, 상급기관 제도개선과 연계 소극행정 탈피를 위한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 등 직원 인식확산에 노력
- 내부직원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필요

## 비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추진  
방향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핵심  
과제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제도정비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3.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  
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소극행정 혁파

핵심  
과제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1. 소극행정 예방체계 마련
2.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항 조사·처리

## II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1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전담부서 및 책임관: 기획감사관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의 역할
  - 적극행정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홍보 등

## 2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개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예정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

- 적극행정위원회 실행계획(안) 심의: 2021. 4월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시달 : 2021. 5월/11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의결 : 2021. 6월/12월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심의 : 수시

## 3

###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 적극행정 전 직원 교육

-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안내 및 이수독려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나라배움터 '적극행정 교육' 등
- 적극행정 관련 교육자료 전파
  -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권익위), 적극행정면책 우수사례집(행안부) 등
  - 적극행정 관련 교육 기관지정학습 지정·운영 검토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20.9.9.)
- 이행계획
  -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안내 및 이수독려('21. 5 .예정)

- 적극행정 관련 상시학습 기관지정학습 지정·운영 검토보고(21. 하반기)
- 적극행정 교육자료 전파(자료 업데이트 수시)

**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등 관리·추진

군민체감형  
중점과제

**청년창업농 주택단지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어서실 축사단지 철거 후 청년창업농 주택단지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
- 2021. 4. 공모신청
- 2021. 6. 선정 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 추진
- 자동차세,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민세 등
- 적용기간: 2021. 1. 1. ~ 2021. 12. 31.
- 감면 예상액: 44,850천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생활방역의 날 운영
  - 주 2회 실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임시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 지적·지방세·차량등록 외 모든 민원 1곳에서 처리

### Ⅲ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1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 추진내용

○ 선발시기: 반기별 (6월, 12월)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 공무원 외 공무직·비정규직 등 모든 기관 구성원으로 대상 확대

○ 선정대상

-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담당자
- 군민이 추천한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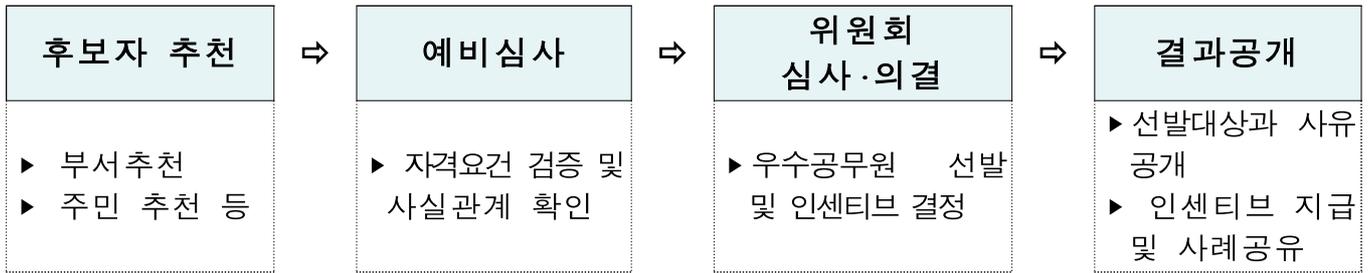
○ 선정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기여도 등에 따라 평가

○ 인센티브 지급

- 인사상 우대, 시상금 지급

## 《 선발절차 》



## I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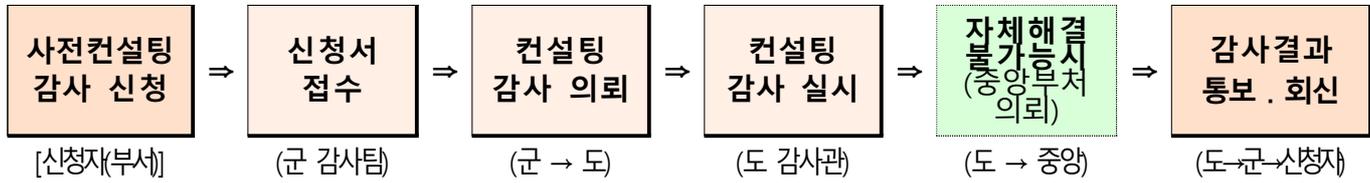
#### □ 추진개요

#####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

\*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21. 2. 10.시행, 훈령→조례)

##### ○ 처리절차



- **감사방법:** 서면자료 활용,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 충청북도 감사관(컨설팅감사팀)에서 일괄 운영 중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 법령 등 해석만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 □ 이행계획

- 매분기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홍보
  - 제도 안내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전 기관(부서) 홍보 공문 발송
  - \* 사전컨설팅제도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 2

##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

### □ 추진개요

- **면책 규정 일부개정 완료**
  -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2020. 7. 31. 훈령 제510호)
- **개정 주요 내용**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포괄적 → 구체적, 기준 확대)
  - 면책 신청기한 폐지(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 → 단서조항 삭제)
  - 고충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 시 면책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후 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 <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31.]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기획감사관은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6.29, 19.6.14.>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31.>

## □ 이행계획

### ○ 면책제도 관련 상급기관 규정 개정사항 수시 반영

- 면책제도 관련 상급기관(감사원, 도) 규정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개선 및 개정사항 검토 후 신속히 반영

## 3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

## □ 추진개요

-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상 피(被) 고소·고발시 지원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 지원을 위한 책임보험 운영 및 내실화

## □ 이행계획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영동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훈령) 제정.시행: '21. 6. 까지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책임보험 운영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행안부가 이미 책임보험을 가입한 47개 자치단체에게 권고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주요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익년도 책임보험 운영 방법 결정

## V

### 소극행정 혁파

#### 1

### 소극행정 예방체계 마련

#### □ 추진개요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일부개정 완료

-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2020. 7. 31. 훈령 제510호)

- 개정 주요 내용

- 소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기준 명문화(관련 규정 보완)
-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관련 규정 보완)

<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략)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묵인·방치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략)

5. "중벌"이란「영동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이 소극행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정해진 처분범위에서 최고수위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31.]

**제6조(면책대상 제외 및 중벌 처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의 경우

3.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묵인·방치의 경우

4.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7.31.>

7.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로 위법·부당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벌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07.31.>

## □ 이행계획

### ○ 소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기준 공유로 행태 개선 유도(수시)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고, 소속기관과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방치·묵인 하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수시)

- 소극행정 여부 조사 시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2****소극행정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항 조사 · 처리****□ 추진개요**

- 소극행정 행태의 수시 점검(공직감찰, 복무점검 등)을 통한 소극행정 예방 및 선제적 조치로 소극행정 방지 노력

**□ 이행계획**

- 공직감찰 시 소극행정 점검 병행(계속)

구분	점검내용	점검기간
2021년 상반기	설명절 공직감찰	'21. 1. 22. ~ 2. 19. 기시행
2021년 하반기	하계휴가철 공직감찰	'21. 7 ~ 8월 중 점검예정
	추석명절 공직감찰	'21. 8 ~ 9월 중 점검예정
	연말연시 공직감찰	'21. 12월 ~'22. 1월 중 점검예정

**Ⅶ**

**향후계획**

□ **해당부서: 추진과제별 운영**

주요 내용	일정	담당(협조)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전파	4월	의회법무팀(전 부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수시	의회법무팀
○ 적극행정 교육 실시	5월	의회법무팀(서무팀)
2.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7월, 12월	의회법무팀(행정팀)
3.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수시	감사팀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계속	의회법무팀
4. 군민체감형 과제발굴 및 소극행정 혁파		
○ 군민체감형 과제 발굴	수시	의회법무팀(전 부서)
○ 소극행정 점검 강화	수시	감사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수시	감사팀